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개정('19.12.3.공포, '20.12.4.시행)에 따라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의무, 혈액공급량 등 보고의무, 혈액원 회계구분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의무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13조의4)
- 나.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업무 규정(안 제13조제3항, 제4항)
- 다. 수혈관리위원회 구성방식 규정(안 제13조의2)
- 라.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안 제13조의3)
- 마. 혈액원의 정보제출의무(안 제16조)
- 바. 의료기관 정보제출의무 신설(안 제16조의2)
- 사. 혈액원 사업계획 제출사항 구체화(안 제22조)
- 아.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교육기준(안 별표 제5의2)
- 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6)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3조(종전 제20조) 중 “법 제17조의2”를 “법 제17조의3”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4조의2로 하고,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수혈량과 폐기량 등 의료기관에 입고된 모든 혈액제제의 양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2021년 6월까지의 기간: 병상 수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단위 이상 의료기관
2.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병상수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 사용량 10,000단위 이상 의료기관
3. 2022년 7월부터의 기간: 병상 수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 사용량 5,000단위 이상 의료기관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부터 병상수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 사용량 1,000단위 이상 의료기관은 2021년 7월부터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이하 “수혈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수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혈 관련 기준, 규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수혈 혈액 등의 보관·사용·폐기에 관한 사항
4. 수혈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 및 혈액 부족 시 대처에 관한 사항
5. 수혈의 적정성(환자혈액관리, 수혈대체요법 등 포함)에 관한 사항
6. 수혈의 안전성 및 질 향상에 관한 사항
7. 수혈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혈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실(이하 “수혈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혈 혈액의 보관·사용·폐기 관리
2.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평가
3. 수혈 적정성 지표의 관리 및 평가
4. 수혈 오류 및 수혈이상반응 등의 발생 감시, 조사 및 대책 수립
5. 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의 수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

제13조의2(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수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1. 진료부서의 장
2. 간호부서의 장
3. 혈액은행 관리 의사
4. 수혈관리실장 (수혈관리실을 설치한 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내과계, 외과계, 마취통증의학과 등 수혈 관련 의사
6. 기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혈액원의 제출정보 등)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혈액원(혈액 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당일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익일 오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혈액을 혈액제제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 혈액제제의 공급일자 및 공급처

2. 혈액이 부적격혈액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한 경우 : 혈액제제의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

3. 혈액을 혈액제제로 제조하여 공급하거나 부적격혈액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하지 않은 경우 : 혈액제제의 재고량

제16조의2(의료기관의 제출정보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를 1000단위 이상 공급받은 의료기관

2. 2021.12월부터 2022년 11월: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를 500단위 이상 공급받은 의료기관

3.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를 100단위 이상 공급받은 의료기관

4. 2023년 12월부터 : 공급받은 전체 혈액제제를 1단위 이상 사용하거나 재고로 보관하거나 폐기한 의료기관

② 법제13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출정보의 내용”은 혈액원으로부터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전체 혈액제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의료기관 기초 정보: 병상 수, ABO/Rh 혈액형별 혈액제제별 전년도 일평균 혈액사용량, 적정재고량, 최소재고량

2. 혈액단위별 개별 혈액 정보: 출고처(의료기관명), 혈액번호, ABO/R

h 혈액형, 혈액제제명, 입고일, 입고시간, 출고일, 출고시간, 폐기일, 폐기시간

3. 수혈자 정보: 성별, 연령, ABO/Rh 혈액형, 진료과목

4. 그밖에 혈액수급 및 사용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항 제1호 정보의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일 12시(정오)까지 전일의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말 및 공휴일은 익일 정상 근무일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혈액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당일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본문 중 “당해의료기관”을 “당해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수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수혈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

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수혈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수혈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수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4(수혈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혈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혈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수혈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은 별표 제5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혈액원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입·
 제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20조 관련)”을 “(제2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다목 중 “법 제17조의2”를 “법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2호 위반행
 위 가목의 근거법조문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7조의3제1
 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나목의 근거법조문란 “법 제17조의2
 제1항제2호”를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다
 목의 근거법조문란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를 “법 제17조의3제1항제3
 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라목의 근거법조문란 “법 제17조의2제1항
 제4호”를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마목을 신설한다.

마. 혈액원이 제17조의2제3 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사 업계획, 예산안, 수입·지 출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 제17조 의3제1항 제5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	------	-------------	-------------

경우				
----	--	--	--	--

바목(중전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3 1항제6호			
1)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5의2]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및 수혈관리위원회 위원의 교육기준(제13조의4제3항 관련)

1. 교육 내용: 수혈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수혈 지침, 적정 수혈, 응급/대량 수혈, 수혈이상반응 및 대처, 수혈 관련 검사, 수혈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수혈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혈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 비고: 수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및 수혈관리위원회 위원이 제3호라목에 따른 수혈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8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3조</u>(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u>당해의료기관</u>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u>법 제10조제2항</u>에 따른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제14조</u>(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① ----- ----- ----- ----- <u>당해 의료기관</u>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0조제3항</u>----- ----- -----. 1. ~ 5. (현행과 같음) <u>제13조</u>(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① <u>법 제9조의 2 제1항에서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수혈량과 폐기량 등 의료기관에 입고된 모든 혈액제제의 양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u>

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2021년 6월까지의 기간: 병상수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단위 이상 의료기관

2.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병상수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 사용량 10,000단위 이상 의료기관

3. 2022년 7월부터의 기간: 병상수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 사용량 5,000단위 이상 의료기관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부터 병상수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 사용량 1,000단위 이상 의료기관은 2021년 7월부터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이하 “수혈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수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혈 관련 기준, 규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수혈 혈액 등의 보관·사용·폐기에 관한 사항
 4. 수혈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및 혈액 부족 시 대처에 관한 사항
 5. 수혈의 적정성(환자혈액관리, 수혈대체요법 등 포함)에 관한 사항
 6. 수혈의 안전성 및 질 향상에 관한 사항
 7. 수혈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혈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④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실(이하 “수혈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혈 혈액의 보관·사용·폐기 관리
 2.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평가

<신 설>

3. 수혈 적정성 지표의 관리 및 평가

4. 수혈 오류 및 수혈이상반응 등의 발생 감시, 조사 및 대책 수립

5. 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의 수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

제13조의2(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수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1. 진료부서의 장

2. 간호부서의 장

3. 혈액은행 관리 의사

4. 수혈관리실장 (수혈관리실을 설치한 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의2 · 제14조 (생략)

<신설>

5. 내과계, 외과계, 마취통증의학과 등 수혈 관련 의사

6. 기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의2 · 제15조 (현행 제13조의2 및 제14조와 같음)

제13조의3(수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수혈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수혈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수혈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신 설>

<신 설>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수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4(수혈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혈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혈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수혈
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실 근
무인력은 별표 제5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혈액원의 제출정보 등) 법

제15조 ~ 제19조 (생략)

<신설>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혈액원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당일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익일 오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혈액을 혈액제제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 혈액제제의 공급일자 및 공급처
2. 혈액이 부적격혈액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한 경우 : 혈액제제의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
3. 혈액을 혈액제제로 제조하여 공급하거나 부적격혈액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하지 않은 경우 : 혈액제제의 재고량

제17조 ~ 제21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16조의2(의료기관의 제출정보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

월: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를 1
000단위 이상 공급받은 의료
기관

2. 2021.12월부터 2022년 11월: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를 500
단위 이상 공급받은 의료기관

3.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
월: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를 1
00단위 이상 공급받은 의료기
관

4. 2023년 12월부터 : 공급받은
전체 혈액제제를 1단위 이상
사용하거나 재고로 보관하거
나 폐기한 의료기관

② 법제13조의2 제3항에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출정
보의 내용”은 혈액원으로부터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전체 혈액
제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를 말한다.

1. 의료기관 기초 정보: 병상 수,
ABO/Rh 혈액형별 혈액제제
별 전년도 일평균 혈액사용량,
적정재고량, 최소재고량

2. 혈액단위별 개별 혈액 정보:
출고처(의료기관명), 혈액번

호, ABO/Rh 혈액형, 혈액제
제명, 입고일, 입고시간, 출고
일, 출고시간, 폐기일, 폐기시
간

3. 수혈자 정보: 성별, 연령, AB
O/Rh 혈액형, 진료과목

4. 그밖에 혈액수급 및 사용 관
련 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항 제1호 정보
의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매일 12시(정오)까지 전일의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말 및 공휴일은 익일 정상
근무일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혈액부
족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당

<u>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의2</u>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u>제21조 (생략)</u> <u><신설></u>	<u>일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u> <u>⑤ 의료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의3</u>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u>제24조 (현행 제21조와 같음)</u> <u>제22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혈액원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u> <u>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지출결산서</u> <u>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u> <u>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u>
--	---